



재앙(災殃)이 된 역사적 판결(判決)

김 원 기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미국은 법치국가의 전형으로 이야기된다. 이는 그 법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가를 떠나 일단 사회적 질서를 위해 법의 강제력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 이해가 상충하는 다수를 한 울타리에서 포용하고 공생하는 데 있어 일부의 이견이나 반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일찍부터 이러한 갈등을 불가피하게 수긍하면서도 호오(好惡)를 떠나 법에 의한 통제를 당연히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정점에는 대법원(Supreme Court)의 권위가 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정치 세력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그 정치적 세력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견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다. 권위와 신뢰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한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대법원이 한때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민심은 이반하여 그 자체가 조롱거리로 전락한 때가 있었다. 예컨대 미국 제2대 대법원장 로저 태니(Roger Taney)에 의해 내려진,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스코트 대 샌포드(Scott v. Sandford) 사건’의 경우이다. 실은 별 것이 아닐 수 있는 작은 사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사실은 종종 있어 왔다. 당연히 이 사건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사법부가 관여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장의 판단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 사례라는 특이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국력에 걸맞지 않게 불법과 무질서가 심하다고 개탄하는 소리가 크다. 또한 많은 법과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못 얻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식자들의 우려도 크다. 더구나 종종 사법살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현령비현령 등 법에 대한 불신의 표현은 허다하게 쓰인다. 이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통치를 겪으면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으로부터 억압받았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도 법의 지배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라 보인다.



대학산책

이러한 시기에 동떨어진 한 시대의 한 사건을 음미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법에 대한 신뢰와 법 판결에 대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에서이다.

미국의 제2대 대법원장이 된 로저 태니(Roger Taney)는 처음 20년 동안 비교적 원만하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여 대법원을 무난히 이끌었다. 그는 초대 대법원장인 존 마셜 지지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온건한 태도와 조용한 관리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데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1850년대가 되면서 대법원은 국민을 참여하게 대립시키고 있던 노예제도라는 문제에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1619년 아메리카에 들어온 이래 미국인 주인을 위해 일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예제 폐지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운동은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다. 대립을 우려한 의회는 1820년 '미주리협정'을 통해 노예제 옹호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균형을 모색하였다. 이 타협안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노예주(Slave State)'로, 메인주는 '자유주(Free State)'로 연방의 구성원이 되며, 나아가 미주리주의 남쪽 경계를 기준으로 북쪽에 놓여 있는 서부지역들은 노예제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얼마 후 연방은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아이오와주 등을 새로운 자유주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이제까지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 노예제 옹호자들의 불만이 컸다. 1854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스테판 더글라스는 격화되는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캔자스-네브래스카법(Kansas-Nebraska Act)을 발의·통과시켰다. 이는 캔자스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주민들의 투표로 자유주, 노예주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제는 이 법이 노예제 반대자들의 분노를 샀다. 왜냐하면 네브래스카주는 이미 미주리협정에 의해 자유주에 속하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하면 노예주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드레드 스코트(Dred Scott) 사건'이 상정된 것은 바로 이 즈음, 1856년이였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주에 주둔하고 있던 군의관 존 에머슨 소유의 노예였다. 1834년 에머슨은 일리노이주의 한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서 그 곳으로 스코트를 데리고 갔다. 일리노이주는 자유주로 노예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스코트는 논리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그 곳에서 스코트는 결혼하고 자식도 가졌다. 1830년대 후반 에머슨과 스코트는 다시 미주리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미주리주는 노예주였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다시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1843년 에머슨이 죽었을 때 스코트와 그의 가족은 에머슨 미망인의 재산이 되었다. 얼마 후 에머슨의 미망인이 뉴욕의 한 노예제 폐기론자와 결혼하여 뉴욕으로 떠나가자 스코트와 그의 가족은 미주리주의 피터 블로우에게 맡겨졌다.

개인적으로 노예제를 혐오하는 블로우는 노예제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코트를 시험적인 케이스로 선택하였다. 1846년 스코트는 블로우의 충동에 따라 자유를 요구하는 소송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1850년 지방법원은 스코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유인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미주리대법원은 달랐다. 스



코트가 일리노이주에서 자유인으로 지낸 시기에 관계없이 미주리 국경을 넘어 옴과 동시에 스코트는 다시 노예가 된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 사이 스코트의 소유권은 블로우에서 샌포드(Sandford)라는 사람의 노예제 폐기론자에게 넘어갔다. 샌포드는 스코트를 도와 연방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도록 충동하였다. 이 소송이 스코트 대 샌포드사건(Scott v. Sandford)으로, 소송 상대방이 샌포드로 된 것은 스코트가 자기 주인인 샌포드에게 자유를 달라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로저 태니의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 동안 친노예제파와 반노예제파들은 그 결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결과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길 기대하였다.

노예들에 의한 재배농업이 확대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노예제도에 대한 로저 태니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았다. 오래 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들을 해방할 정도로 반노예제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노예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하게 지지할 정도로 입장이 바뀌었다. 한때, 연방의 법무장관 시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법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항구에 정박한 배에서 흑인들이 자유인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을 때 로저 태니는 그것을 지지하였으나, 반면 펜실베이니아주의 항구에 들어온 노예는 자유인이 된다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법이 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입장을 바꾸어 그 법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스코트의 사건을 다루면서 로저 태니는 자기의 원칙을 세 가지로 압축하였다.

첫째, 특별히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준 권한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권한은 주정부가 갖는다.

둘째, 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셋째, 흑인이란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로저 태니는 본능적으로 손쉬운 길을 찾아 빠져나감으로써 이 사건이 가져올 혼란에서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노예란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심리없이 사건을 기각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 복부 출신의 판사가 이 결정에 대한 반대이견으로 노예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발표하고 이에 질세라 남부의 한 판사는 이 결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친노예제 옹호의 의견을 내놓아 서로 험악하게 대립하는 걸 보고 로저 태니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판사들의 대다수가 친노예주의 출신이란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그들이 자기와 같이 드레드 스코트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리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대법원에서 터놓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노예제란 폭발적인 현안이 잠잠해지리라는 판단에서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것은 로저 태니의 크나큰 오판이었다. 또한 대법원 판사들도 노예문제란 그렇게 간단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충고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7대 2의 압도적인 차이로 스코트



의 권리를 부인하였다. 로저 태니는 심리를 종결하면서 평상시의 신중함을 잃고 노예제 폐지의 옹호자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로저 태니는 헌법의 작성자들마저도 “흑인(Negroes)이란 열등계층의 존재(beings of an inferior order)이다. 그들은 백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기에는 너무 저급의 동물이다”는 의견이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미주리협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비헌법적이라고 선언하였다.

로저 태니는 생각하기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면 과열된 이 심각한 논쟁은 사라지고 노예제 폐지운동의 불길도 잡히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의 결정은 노예논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제 스코트 개인의 자유는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실은 판결 후 스코트의 소유주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는데도 이미 문제는 개인의 영역을 떠나 멈출 수 없는 역사의 궤도로 진입하였다.

우선 이 판결은 민주당을 갈라놓았다. 남부의 민주당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예주로 승인된 각 주는 노예제를 폐지할 수 없고, 연방정부는 이런 주(state)의 노예소유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해석은 이미 로저 태니의 격렬한 표현에 분노하고 있던 북부의 민주당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의 일부는 아직도 각 주의 노예 인정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더글라스의 안에 미련을 갖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북부의 민주당원들은 노예제를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들은 노예제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기존의 당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당, 공화당을 만들었다. 새로운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로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을 내세웠고, 링컨은 1860년 양분된 민주당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드레드 스코트의 논쟁이 일으킨 흥분된 감정에 둘러싸여 있던 남부의 주들은 링컨 대통령의 당선에 분노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결국 그들은 연방을 탈퇴하고, 1년 후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드레드 스코트 사건’은 대법원, 로저 태니 그리고 국민들 모두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대법원은 존경도, 신뢰도, 권위도 잃고 표류하였다. 특히 정부가 있었던 북부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여 법원의 통제력은 마비되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남북전쟁의 초기, 존 메리멘이라는 사람이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방에서 탈퇴하도록 부추겼다. 대통령 링컨은 메릴랜드 같은 접경주(접경주란 남북전쟁 당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경계에 있던 주로서 메릴랜드주 이외에 델라웨어주,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미주리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가 연방에 남아 있어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존 메리멘의 행동을 엄하게 다스리려고 걱정하였다. 그는 연방군에게 메리멘을 체포하여 연방감옥에 수감토록 하였다. 메리멘은 로저 태니에게 일반인인 자기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달



라고 간청하였다. 이미 국민들의 조롱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는, 링컨에 도전하는 것은 더 많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 메리멘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링컨은 가볍게 그의 결정을 무시해 버렸다. 로저 태니는 격노하여 민사재판을 받을 일반인의 권리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의회만이 할 수 있다고 항의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로저 태니도 그의 대법원도 링컨과 대적할 어느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미국 국민은 로저 태니가 재임 초기에 보여준 능력과 리더십을 잊어버렸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다. “남북전쟁 동안에 워싱턴에서 대법원장 로저 태니보다 서글픈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1864년 10월 12일 전쟁의 와중에서, 그는 무수한 과오의 짐을 떠안고 지치고 고독한 한 인간으로 생을 마쳤다. 그의 나이 87세 때였다.

로저 태니는 79세가 되던 해 은퇴를 결심한 적이 있었다. 사실 건강을 보아서도 그는 업무를 지탱하기에 무리여서 은퇴해도 좋을 나이였다. 그때 로저 태니가 처음 생각대로 은퇴했다 라면, 그때까지 그의 업적을 기억하는 많은 미국민들 사이에서 그는 능력있고 용기있는 저명한 인사로 영원히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엉거주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단 한번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전 생애의 명성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재앙을 맞았다. 신문들은 앞장서 조롱감으로 로저 태니를 취급하였고 심지어는 그의 정당하고 용기있는 행동까지도 멸시의 대상으로 묘사되곤 하였다. 재앙은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나라 전체에 파급되었다. 국론은 양분되고 상호대립의 주들은 전쟁으로 치달았다. 불신과 경멸은 수십 년간 대법원의 권위를 훼손하였고 대법원의 기능은 절름발이가 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최악의 하나라고 여긴다.

우리는 정치적 사건에 불가피하게 관여했던 많은 판사들이 후에 그 정치적 판결로 인해 곤욕과 불명예에 시달리게 된 경우를 잘 기억한다. 한편으로는 내실있는 법, 소신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비난의 표적이 된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 스코트의 판결은 결국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법은 그리고 법의 판단은 항상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알려주는 케이스라 할 것이다. **판결**